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62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이건태 · 김종민
김현정 · 이연희 · 이해식
김문수 · 한정애 · 조계원
이병진 · 박홍배 · 이정문
김성희 · 복기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

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을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 또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등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
2.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

제12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 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u>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u>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조(<u>기술이전 · 취득 및 사업</u> <u>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중견기업 또는 「해외진</u> <u>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u> <u>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u> <u>국내복귀기업이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자체 연구 · 개발한 특</u> <u>허권등 또는 내국인으로부터</u> <u>취득하거나 이전 · 대여받은 특</u> <u>허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u> <u>나 이전 · 대여받은 특허권등은</u> <u>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u> <u>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u> <u>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u> <u>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u> <u>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u> <u>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u> <u>을 감면한다.</u>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	1.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u> 2. <u>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 ----- ----- -----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 ----- ----- -----
---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Each set consists of two short dashes followed by a small gap. The lines are evenly spaced vertically across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4. -----제12조제1항 · 제3항 · 제4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③・④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ncludes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